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14 발의연월일: 2020. 9. 10.

발 의 자 : 임이자·송언석·박대수

정진석 • 이종성 • 권명호

한무경 • 이명수 • 윤영석

윤재옥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되,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또한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등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더하여 징수하도록 하되, 이 경우 총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4대사회보험인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연체금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 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현행법상 연체금에 대한 규정을 이 와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고용보험료, 산재보험료 등의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국민연금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비율, 상한과 동일하게 개정하려 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전단 중 "1천분의 1"을 "1천500분의 1"로 하고, 같은 항후단 중 "1천분의 30"을 "1천분의 20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3천분의 1"을 "6천분의 1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1천분의 90"을 "1천분의 50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연체금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연체금의 징수) ① 건강보	제25조(연체금의 징수) ①
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,	
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	
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	
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	
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	
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	
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, 그	
밖의 징수금의 <u>1천분의 1</u> 에 해	<u>1천500분의 1</u>
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	
을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은	
체납된 보험료등의 <u>1천분의 30</u>	<u>1천분의</u>
을 초과하지 못한다.	<u>20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	③
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	
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	
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	
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	
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	
<u>3천분의 1</u> 에 해당하는 연체금	<u>6천분의 1</u>
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	
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연체금	

은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	
수금의 <u>1천분의 90</u> 을 넘지 못	<u>1천분의 50</u>
한다.	-,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